

영등포구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박 정 자 의원 발의】



2018. 9. 1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9호로 2018년 8월 31일 박정자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설치 시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와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철거되는 주차장 면수의 2분의 1이상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 및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4)

나.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개정(안 제5조)

- 6미터 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시 확보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 신설(안 제21조의4)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8. 8. 24 ~ 8. 30.):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노후·고장 등의

사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확보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1조의2는 자지법규 입안 순서에 따라 목적규정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에 따라, 현 조례 제1조의2는 제1조3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현 조례 제4장 제21조의2 부설주차장 관련 용어 정의도 안 제1조의2로 이동하고 제21조의2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 안 제4조의4에서는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 조례 제4장 제20조의2 여성우선 주차구획과 제20조의3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규정을 제1장 제4조의5 및 제4조의6을 신설하여 각각 이동하고 별지 서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현 조례 제20조의2와 제20조의3은 삭제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 노상주차장 설치 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미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였고
 - 안 제21조의4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노후·고장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총합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 노상주차장 설치 시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장치의 철거 시 확보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 기계식주차장치 사용기간별 설치 현황

동별	합계			10년미만(2008~)			10년~20년미만 (1999~2008)			20년이상(~1998)		
	개소	기수	대수	개소	기수	대수	개소	기수	대수	개소	기수	대수
합 계	650	1,167	13,372	266	366	5,794	149	289	4,166	235	512	3,412
영등포본동	5	7	56				2	2	31	3	5	25
영등포동	160	238	4,042	78	89	2,277	34	35	731	48	114	1,034
여의도동	48	326	1,844	8	67	361	20	131	945	20	128	538
당산1동	52	71	745	20	32	250	11	12	270	21	27	225
당산2동	93	130	1,914	53	66	1,276	20	22	337	20	42	301
도림동	29	38	424	11	11	84	6	10	270	12	17	70
문래동	25	31	475	12	12	144	5	7	203	8	12	128
양평1동	27	44	850	9	9	244	7	19	303	11	16	303
양평2동	39	42	731	27	28	488	5	5	152	7	9	91
신길1동	20	25	322	7	7	107	7	8	199	6	10	16
신길3동	15	18	198	3	3	81	2	2	21	10	13	96
신길4동	5	13	61	2	2	46				3	11	15
신길5동	5	5	79				3	3	47	2	2	32
신길6동	23	29	259	7	7	94	3	3	99	13	19	66
신길7동	5	8	67				1	1	17	4	7	50
대림1동	21	34	346	6	6	26	4	5	176	11	23	144
대림2동	21	25	312	8	9	132	7	9	154	6	7	26
대림3동	57	83	647	15	18	184	12	15	211	30	50	252

관 련 법 령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7. 10. 24.>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6. 1. 19.>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 7. 19.>[전문개정 2010. 10. 21.]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8. 1. 30.>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 기준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p>(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p> <p>(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p>